

## 오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

제정 1989년 1월 1일 조례 제 6호

개정 1989년 3월 17일 조례 제 114호

일부개정 2011년 10월 24일 조례 제1157호

(제명개정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오산시 또는 오산시장(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포상금 지급대상자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수행자(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)로 표시된 공무원. 다만,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.

〈개정 2011. 10. 24〉

1. 시가 원고인 경우 :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

2.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: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〈개정 2011. 10. 24〉

**제3조(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)**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. 〈개정 2011. 10. 24〉

**제4조(포상금 지급기준)** ① 오산시 또는 오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. 〈개정 2011. 10. 24〉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심급별로 결정한다.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. 〈개정 2011. 10. 24〉

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

## 오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

아니한다. <개정 2011. 10. 24>

1. 소취하(쌍방 취하 포함)된 경우
2.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

**제5조(포상금 지급액)**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준비서면(답변서를 포함한다)등의 제출과 변론 수행의 횟수를 합하여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.

1. 행정소송(본안) : 1사건당 20만원 이내
  2. 민사소송(본안) : 1사건당 20만원 이내
  3. 가처분신청사건(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사건은 제외한다)과 「소액사건심판법」에 따른 소액사건 : 1사건당 10만원 이내
-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 10. 24]

**제6조(포상금 지급신청)** 제2조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서식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1. 10. 24]

**제7조(표창)**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.

[제6조에서 이동 <2011. 10. 24> ]

### 부칙

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1989. 3. 17 조례 제11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1. 10. 24 조례 제1157호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적용례)**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이 조례 시행 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

